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

<2017. 12. 15.>

■ 인사청문회 개요

가. 목 적

- 2017. 4. 14자로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간 체결된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개정)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를 통하여 경영능력과 자질을 갖춘 우수 인재 영입을 도모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간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서('17.4.14)

1. 본 협약에 의한 인사청문회 실시 대상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설립예정 포함) 서울특별시 산하 지방공사·지방공단인 장으로 하며, 추후 대상기관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한다.

서울특별시 산하 지방공기업의 장 임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T/F 합의문('17.4.14)

3. 시의회는 시장의 인사청문 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휴무,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인사청문회는 차수 변경 없이 1일) 이내에 <별지 2>의 내용이 포함된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나. 안 건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후보자(김세용) 인사청문

다. 인사청문회 실시 일자

2017. 12. 21(목) 10:00 ~

라. 장 소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 인사청문회 진행방식

- 가. 위원회는 임명후보자를 출석하게 하여 언론 공개 등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선서를 하게 한 후 10분의 범위에서 임명후보자의 정책 소견을 들은 다음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운영.
- 나. 위원의 질의는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나 서면질의 등 다른 방식을 병행할 수 있음.
- 다. 위원별 본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을, 보충질의는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
- 라. 보충질의는 다른 위원의 본질의 종료 후에 실시하고, 보충질의 횟수는 제한하지 않음. 다만, 보충질의시간이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위원장은 질의시간 초과안내 후에 다른 위원에게 발언을 허가할 수 있음.

■ 자료제출요구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거쳐 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임명후보자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청문회 개최 24시간 전까지 답변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 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기재사항
 - 청문개요, 청문특위 활동경과, 청문 실시 내용, 심사결과 요약, 첨부자료 (임명후보자 이력서,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인사청문계획서, 자료미제출 사유, 서면질의 답변서 등)
- 나.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김세용)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채택함.

- 붙임 : 1.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요
2. 인사청문위원회 위원명단
3.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임명후보자 프로필
4. 서면질의서

[붙임1]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요

1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의사일정 : 2017. 12. 15.(금)

일 시	안 건	비 고
12. 15.(금)	1. 위원장 선임(위원장 직무대행 : 000 위원) 2. 부위원장 선임 3.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 (일정 포함)	도시계획 관리위원회 회의실

인사청문회 일정 : 확정 예정

일 시	안 건	비 고
-	1.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의 건 2.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도시계획 관리위원회 회의실

인사청문회 진행순서

- ① 위원장 인사말씀 및 안건 상정
- ② 000 사장 후보자 선서 및 소견발표
- ③ 질의 및 답변
- ④ 후보자 최종 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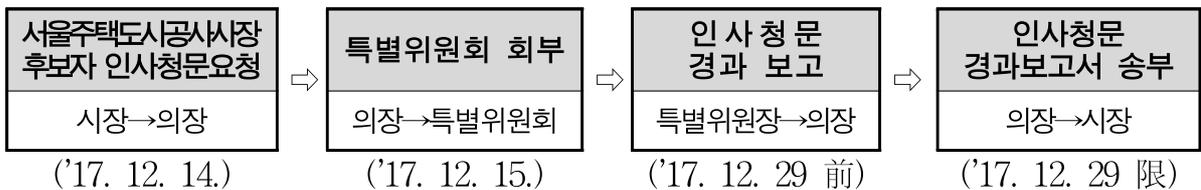
2

인사청문회 관련근거

□ 관련근거 및 절차

-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간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서('17. 4. 14.)
-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의장 임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TF 합의문('17. 4. 14.)
- 시의회 인사청문 기한 : 인사청문 요청서 접수후 10일 이내

※ 인사청문회는 차수 변경 없이 10일 이내 1일간 시행



□ 인사청문 관련 주요 규정

- 시장이 후보자 단수선정, 인사청문회 개최 요청하면 시의회는 1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여 경과보고서 제출(휴무, 공휴일 제외)(협약서 제2조)
- 후보자의 경영능력, 정책수행능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협약서 제4조)
- 시의회의 인사청문 결과는 시장의 임명권한을 기속하지 아니함(합의문 제4조)
- 인사청문회 공개 원칙(아래의 경우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가능)(합의문 제6조)
 - 군사·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 우려의 경우
 -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할 경우
 -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임명후보자·증인·참고인 등이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를 비공개로 요구하는 경우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해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 청문회 진행 방식(합의문 제7조)
 - 임명후보자 출석, 공개 동의 여부 확인, 선서, 정책소견 발표 및 질의답변
 - 질의는 일문일답(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이내)
-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기재사항(합의문 제3조)
 - 청문개요, 청문특위 활동경과, 청문 실시 내용, 심사결과 요약, 첨부자료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간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는 시 산하 지방공기업의 장으로서 경영능력과 자질을 갖춘 우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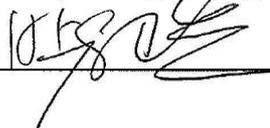
1. 본 협약에 의한 인사청문회 실시 대상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설립예정 포함) 서울특별시 산하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장으로 하며, 추후 대상기관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한다.
2. 해당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후보자 중 시장이 단수로 선정하여 시의회에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청하고, 시의회는 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때 인사청문회는 차수 변경 없이 1일 이내에 마치기로 한다.
3. 시의회는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해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4.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경영능력, 정책수행능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5. 인사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6. 본 협약에 따른 인사청문회는 2015년 8월 17일 이후 임명하는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장부터 실시하기로 한다.
7. 본 협약의 시행을 위한 기타 세부사항은 시와 시의회에서 공동으로 구성한 별도의 회의기구(TF)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본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약속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7년 4월 14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양준욱



서울특별시 산하 지방공기업의 장 임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T/F 합의문

1. 서울특별시 산하 지방공사·지방공단(이하 "임명후보자"라 한다)에 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위원 선임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를 준용하되,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위원을 과반수 포함하며, 관련 전문위원실에서 해당 업무를 지원한다.
2. 시장은 <별지 1>의 서류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하고,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 후 해당 위원회에 즉시 회부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인 때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3. 시의회는 시장의 인사청문 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휴무,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인사청문회는 차수 변경 없이 1일) 이내에 <별지 2>의 내용이 포함된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4. 의장이 제3호의 기한에 인사청문 결과를 송부하지 못했을 때는 시장은 임명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으며, 시의회는 인사청문 결과는 시장의 임명후보자에 대한 임명권한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5.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인사청문 실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폐회 또는 휴회 중인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고, 의장은 이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6. 인사청문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① 군사·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③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 ④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⑤ 임명후보자·증인·참고인 등이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를 비공개로 요구하는 경우
 - ⑥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해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 위원회는 임명후보자를 출석하게 하여 언론 공개 등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3>의 선서를 하게 한 후 10분의 범위에서 임명후보자의 정책 소견을 들은 다음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 ① 위원의 질의는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 질의나 서면질의 등 다른 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
 - ② 위원별 본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보충질의는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보충질의는 다른 위원의 본질의 종료 후에 실시하고, 보충질의 횟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보충질의시간이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위원장은 질의시간 초과 안내 후에 다른 위원에게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
8. 임명후보자에 대한 출석요구는 청문회 개최 3일 전까지, 질의요지서는 48시간 전까지로 하고, 서면질의서는 청문회 개최 3일전까지 송부하며, 24시간 전까지 그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9.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① 위원회가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3일전까지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증언·진술이 공개될 경우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10. 위원장은 소모적·정략적 의도의 발언이나 임명후보자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발언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언중단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①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인사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임명후보자는 위원의 질문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11.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거쳐 임명후보자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 및 해당 시 산하 지방공기업은 청문회 개최 24시간 전까지 답변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2. 그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합의안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등을 준용 한다.

2017년 4월 14일

인사청문 T/F 위원 (시)

인사청문 T/F 위원 (시의회)

기획조정실장

장혁재 

운영위원장

김선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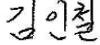
정무수석

허영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동욱 

행정국장

김인철 

자유한국당 대표의원

강감창 

[붙임2]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명단

연번	의원명	지역구	상임위	비고 (소속정당)
1	맹진영	동대문2	기획경제	더불어민주당
2	최조웅	송파6	환경수자원	"
3	김동율	중랑4	도시안전건설	"
4	김인제	구로4	도시계획관리	"
5	우창윤	비례	도시계획관리	"
6	유동균	마포3	도시계획관리	"
7	유찬중	종로2	도시계획관리	"
8	이창섭	강서1	도시계획관리	"
9	김인호	동대문3	교 통	"
10	우형찬	양천3	교 통	"
11	우미경	비례	도시계획관리	자유한국당
12	남창진	송파2	도시계획관리	"
13	박중화	성동1	교 통	"
14	김영한	송파5	기획경제	국민의당
15	이숙자	서초2	도시계획관리	바른정당

[붙임3]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임명후보자 프로필

■ 인적사항

- 성 명 : 김 세 용(金世鏞)
- 생년월일 : 1965.11.14.



■ 학 력

- 고려대학교 건축공학 학사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
- 컬럼비아대학교 건축대학원 석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 박사

■ 주요경력

- '09~현재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06~'09년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부교수
- '12~'15년, '17~현재 고려대학교 관리처장
- '16~현재 한국도시설계학회 부회장
- '14~'15년 컬럼비아대학교 건축대학원 겸임교수
- '15~'16년 하버드대학교 건축대학원 Fellow
- '13~'15년 국가건축정책위원
- '12~'15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
- '04~'06년 건국대학교 건축대학원 건축설계학과 부교수
- '04년 서울시 균형발전촉진지구 Master 건축가
- '03년 경기도 친환경 신도시 자문위원
- '03년 문화관광부 신행정수도 추진 자문위원
- '01년 한·일 국제도시설계학교 지도교사
- '01~'03년 건설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
- '00년 건설교통부 지속가능도시평가위원
- '00년 한국도시설계학회 이사

[붙임4]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후보자 서면질의서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간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서」에 따라 사장후보자에 대한 서면질의서는 3일 전까지 송부, 청문회 개최 24시간 전까지 제출해야함.

I. 사장으로서의 역할, 경영철학 및 전략 등

1 SH공사 사장으로서의 소신과 역할

- 공사사장에 응모한 이유 및 사장 임명후보자로 최종 선정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그동안의 이력과 경력이 공사사장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 공사사장으로써 갖추어야할 덕목은 무엇이고, 본인은 얼마나 부합된다고 생각하는가?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어떻게 채워나갈 생각인가?
- 사장후보자로서의 운영소신과 포부는?
- 사장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공사의 개혁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사장후보자에게 있어 서울시민은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는가?

2 경영철학 및 전략

-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비전은 무엇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 현 경영전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지? 있다면 새롭게 구상하고 있는 경영전략은 무엇인가?
- 서울주택도시공사 경영상의 당면과제는 무엇이며, 그 중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책임·자율경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는데, 서울시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 시의회와의 바람직한 관계유지 및 발전을 위한 견해와 추진전략은 무엇인가?
- 공사의 중점 추진사업에 대해 시의회의 반대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공사의 현안사업에 대한 정책추진시 공공성과 수익성의 딜레마가 발생할 경우 어떤 기준으로 계획을 수립할 것인가?
- 신입사장으로서 새롭게 추진해보고 싶은 사업내지 새롭게 개척하고 싶은 업무영역이 있는가?
- 현재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추진한 사업 중 가장 잘못된 사업 또는 공사가 시도하지 말았어야 할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공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원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부정·부패,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상향을 위한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③ 인사·조직관리 관련

- 정원외 인력의 통합 관리·운영방안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 사내 특정직렬이나 노조의 갈등관리 방안은 무엇이고, 내부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 공정한 인사를 위한 인사원칙과 대책은 무엇인가?
- 공사의 추진사업에 대해 노조의 반대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전문직 인력의 주요 간부급 채용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고, 전임 사장이 영입한 전문직 인력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II. 정책현안 과제에 대한 견해

①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 인구고령화 및 인구감소, 인구·가구변화에 따른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단기 및 중장기 사업전략은 어떻게 개편해야한다고 생각하는가?
- 서울주택도시공사의 현안과제는 무엇이며, 그 중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분야는 무엇이며 실행방안은 무엇인가?
- 정부 주요 정책방향에 맞춰 공사에서 보완해야 할 사업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② 부채관련

- 공사의 부채감축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 부채와 채무의 차이는 무엇이며, 공사의 입장에서 부채감축과 채무감축 중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공사의 부채·채무 감축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이고 감축방안은 무엇인가?

③ 주거복지 및 임대주택 공급·관리 관련

- 서울시 주거복지전담기관으로써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임대주택공급 외에 공사에서 할 수 있는 주거복지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지역별 주거복지센터의 역할과 기능확대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 임대주택 공급확대는 지역주민의 반대와 갈등도 함께 심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임대주택 공급확대는 공사의 부채증가와 연결되는데, 임대주택 공급확대와 부채감축을 어떻게 동시에 달성할 것인가?
- 장기전세주택 관리·운영에 대한 공사의 부담이 지속 증가 중인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강남권 장기전세주택의 공실이 높는데 원인은 무엇이고 향후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서울리츠 사업의 추진이 향후 공사에 미칠 영향과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 임대주택 입주민과 분양주택 입주민이나 인근지역 주민과의 갈등해소를 위한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확대에 대한 장단점 및 견해는 무엇인가?
- 역세권 청년주택 등 청년계층을 위한 임대주택공급 확대가 필요한 이유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대응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4 도시재생사업 관련

- 도시재생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의 갈등원인과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구룡마을이나 백사마을과 같은 노후불량주거지 정비사업에 공사가 참여하여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바람직 또는 바람직하지 않다면 그 이유와 그에 따른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공사의 참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공사에서 참여하고 있는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은 무엇인가?
- 창신송인과 같은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역할과 사업추진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재난위험·열악지역 주거재생사업이나 갈등정체 정비구역 재생사업, 지역거점 활성화 도시재생사업, 공유지 위탁개발, 역세권 개발사업 등을 통한 도시재생사업 등 그간 공사에서 확대·추진해온 도시재생사업의 향후 추진방향과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도시재생 전문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5 서울리츠 관련

- 서울리츠 사업의 추진이 향후 공사에 미칠 영향과 예상되는 긍정적 효과 또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 현재까지 공공토지형 리츠, 재개발리츠, 도시정비리츠, 대형 장기전세 리츠, 사회주택리츠가 운용되고 있는데 이 밖에 리츠방식으로 시행 가능한 사업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 국내외 경제동향 등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으로 서울리츠의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6 기 타

- 그 동안 가든파이버가 활성화 되지 못한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었다고 생각하는가? 향후 가든파이버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선결해야하는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대형 테넌트와 개별 점포 소유자간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마곡지구 조성사업의 현안과제는 무엇이고 향후 개발방향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 서울식물원 조성공사 준공 후 관리방안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 공사의 출자원칙과 기준이 있다면 무엇이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 투자사업시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데 그 취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절차규정에 대하여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직원의 복리후생에서 개선해야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